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면책약정

### 1. 개요 및 주요내용

지난 2003년 11월 17일 자바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버(Java-Based Application Server)를 오픈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 모델로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 JBoss Group LLC가 자신들의 JBoss®애플리케이션서버에 관하여 모든 고객(Production Support customers)에게 면책(indemnification)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제작지원계약(Production Support Agreement)의 일부분으로 체결되는 손실보전보증의 내용은, 특정한 조건 및 제한 하에, JBoss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에 의한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전세계 개인 프로그래머들의 자유로운 참여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또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자들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JBoss Group는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도입하는데 주요한 걸림돌이 되었던 법적 위험을 담보해 줌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 2. 시사점

2003년 초부터 계속된 SCO v. IBM 소송과 관련하여 SCO가 포춘 500대

기업에 리눅스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경고하고, 최근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JBoss Group이 면책(indemnification)을 제공한 것은, 기업 고객들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됨과 동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델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JBoss Group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JBoss 프로젝트, 나아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체를 위해, 개발자들은 타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확대를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JBoss 애플리케이션서버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Geronimo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GNU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및 Apache 라이선스의 호환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처럼, 향후 기업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게 될 경우 라이선스(License)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자료>

- [1] "JBoss to indemnify customers", CNET 2003. 11. 17
- [2] "JBoss downplays open-source code 'plagiarism'", CNET 2003. 11. 12
- [3] "Apache group aims at J2EE applications", CNET 2003. 8. 7
- [4] "SCO Group Raises Battel Cry Again", InformationWeek 2003. 11. 18
- [5]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2002)

(이철남 연구원, 570-4313, seabird33@kisdi.re.kr)